

## 평창조직위 사무소 올림픽 후 철거 유력

대관령면 횡계리 125억 들여 추진  
강원도개발공사 무상사용 부담  
여산낭비 지적속 기존건물 대안도

1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  
여 평창 횡계지역에 신축 예정인 2018  
평창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사무소  
건물이 올림픽 이후 철거가 유력해 예  
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창조직위는 대관령면 횡계리 갑  
자종자진흥원 포장 부지에 총사업비  
125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만

816㎡(3272평) 규모로 평창사무소를  
건립키로 하고 현재 설계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내  
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평창사무소  
에 입주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갑  
자종자진흥원 포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  
대를 받아 평창사무소를 건립해 사용하  
고 올림픽이 끝난 후 강원도개발공사가  
원하면 무상으로 사무소 건물을 넘길  
계획이나 강원도개발공사가 원하지 않

는다면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파  
라 건물 신축 대신 기존 건물을 활용하  
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  
가 극심한 분양난을 겪자 지난 2010년  
10월 춘천에서 알펜시아리조트 인근  
공사소유의 옛 한국콘도 건물로 이전  
했다.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로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사무실과 직원 숙  
소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의회를 비  
롯한 정치권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춘천으로 이전하고, 조직위가 옛 한국

콘도 건물을 사용하면 최소한의 예산  
으로 평창사무소를 확보, 여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홍 도의원은 "강원도개발공사  
가 더 이상 알펜시아에 남아있을 필요  
가 없다"며 "알펜시아 관리를 위한 최  
소 인원만 남기고 다시 춘천 등의 지역  
으로 이전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다해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 평  
창사무소 신축을 위해 설계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며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전한다면 옛 한국콘도 활용방안을 검  
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오인 10fm@kado.net

## 2018 평창 겨울올림픽대회 공식 슬로건 내달 16일 G(Game)- 1000일 행사서 발표

2018 평창 겨울올림픽대회 공식 슬  
로건이 오는 5월 16일 열리는 'G(Gam  
e)-1000일 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26일 평창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  
는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G-  
1000일' 행사를 갖고 대회의 공식 슬로  
건을 발표한다.

현재 조직위는 평창 올림픽 공식 슬  
로건 후보로 2-3개 가량을 압축한 것으  
로 전해졌다.

서울 행사에는 조양호 평창겨울올  
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최문순 지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스  
피드스케이팅 이규혁 선수 등 대회 흥  
보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이후 이들은 강원도에서 마련  
한 8량 규모의 특별열차(경춘선 전철)  
를 이용, 춘천으로 향하면서 열차내에  
서 올림픽 홍보활동을 벌인다.

주요 내빈 등은 춘천 도착 이후 춘천  
캠페이지 부지에서 열리는 강원도 주  
관 공식행사에 참석해 올림픽 붐 조성  
을 위한 국민적 참여를 호소한다.

G-1000일 행사는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이 어우러진 가운데 서울, 춘천을 비  
롯해 강릉, 평창, 정선 등 올림픽 개최  
지와 공동 개최되며, 다원 생중계 된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공식행사  
다음날인 5월 17일까지 국가대표 선수  
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종목 시범경기  
가 열리며, 컬링 등 일부종목은 일반인  
체험 행사로 진행된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대책임이 아닌 경우는

**Q**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모 공사로 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급받았는데 그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사에 40억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 하도급계약서에는 A사의 지분율(60%)과 하도급공사대금(24억원), B사의 지분율(40%)과 하도급공사대금(16억원)을 구분해 기재하였고, 하도급대금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다. B사는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C사에 교부했는데, A사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A, B 양사는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 지급해 왔는데, A사가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9억원은 부도처리되었다. 그 후 A사는 공동수급체에서 중도탈퇴했고 잔여공사는 B사가 완료했다. 이에 C사는 A사가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9억원에 대해 B사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보통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과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하게 되는 하도급대금채무는 조합의 채무인데, 조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57조 제1항에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동수급체

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인 하도급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보통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사례의 경우에는 좀 색다른 면이 있다. 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A사와 B사의 지분율과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실제 대금지급도 A·B사가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씩 각자 지급하였으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도 B사만 제공하였고, A사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C사는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A·B사는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만 각자가 책임을 지고, 다른 구성원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하수급인 C도 동의하여 그런 내용으로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는 본 사례의 경우에는 하수급인 C사는 A사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이를 B사에 연대책무자로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다97898).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